

안양시 직장어린이집 관리·운영 규정

제정	1996. 10. 19	훈령	제303호
개정	1997. 3. 20	훈령	제314호
개정	2002. 11. 4	훈령	제419호
전부개정	2008. 2. 29	훈령	제500호
전부개정	2011. 1. 10	훈령	제558호
일부개정	2011. 6. 27	훈령	제567호
일부개정	2012. 9. 14	훈령	제585호
일부개정	2016. 3. 10	훈령	제651호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59호(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6. 10. 20	훈령	제660호
일부개정	2017. 9. 13	훈령	제67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0. 3. 13	훈령	제7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안양시 소속 직원의 사기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양시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7, 2012. 9. 14, 2017. 9. 1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27, 2012. 9. 14, 2016. 10. 20, 2017. 9. 13, 2020. 3. 13>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직원”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2. 9. 14]

제3조(명칭 및 위치) 안양시 직장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어린이집: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에 둔다)
2. 만안구청 어린이집: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 (만안평생교육센터에 둔다)

[전문개정 2017. 9. 13]

제4조(운영) ① 안양시청 어린이집과 만안구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법인·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0, 2017. 9. 13>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4>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4>

④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 등 근무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⑤ 어린이집은 공휴일(토요 휴무일 포함)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한다.

제5조(입소 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시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1. 6. 27, 2020. 3. 13>

②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6. 27, 2016. 3. 10>

1. 한부모인 직원 자녀, 장애인 직원 자녀 및 다자녀(3명 이상)직원의 자녀
2. 시 소속 부부 직원의 자녀와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 맞벌이 직원의 자녀
4. 맞벌이가 아닌 직원의 자녀

③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모집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가모집에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직원 자녀를 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17. 9. 13>

제6조(입소절차)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양시 직장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② 시장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양시 직장어린이집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제7조(퇴소) 입소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퇴소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때에 재원 중인 자녀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재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단서신설 2017. 9. 13>

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
2. 해당 직원이 퇴소를 원할 때
3. 입소 영유아가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3>

② 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시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0]

제10조 삭제 <2016. 10. 20>

제11조 삭제 <2016. 10. 20>

제12조(예산)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 10. 20>

제13조 삭제 <2016. 10. 20>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서류검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20]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6. 10. 20]

부칙 <2011. 1. 10 훈령 제558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육대상 연령은 2012.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6. 27 훈령 제5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14 훈령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

영 중인 위탁기관, 위탁 만료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3. 10 훈령 제65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59호, 안양시 공무원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안양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을 “청원경찰 및 공무직을”로 한다.

부칙 <2016. 10. 20 훈령 제6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13 훈령 제67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13 훈령 제70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3. 13>

안양시 직장어린이집 입소승인 결정통지서

입 소 아 동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보 호 자	성 명	부 :	소 속	부 :	
		모 :		모 :	
결 정 사 항		어린이집명 :			
		입소예정일 :			
위 아동을 「안양시청어린이집 관리 운영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_____ 어린이집 입소자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